

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 2009.03.16. 1차 개정 2012.02.10.
2차 개정 2014.08.08. 3차 전부개정 2015.11.01.
4차 전부개정 2022.05.02. 5차 개정 2023.01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.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학습법 개선 및 교수역량 개발 연구
2.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업무
3. 학습법 개선 및 학생 학습역량 개발 연구
4.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업무
5. 삭제 <2023.1.16.>
6. 삭제 <2023.1.16.>
7. 삭제 <2023.1.16.>
8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제3조(조직)①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센터에는 책임교수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①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장이 맡는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7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2. 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
3. 교수법 개선 및 교수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4. 학습법 개선 및 학생학습역량 개선에 관한 사항
5. 삭제 <2023.1.16.>
6. 삭제 <2023.1.16.>
7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
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소위원회)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교직원들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국고와 교비회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NCS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